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 부칙 적용례 개정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6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 부칙 적용례 개정	3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국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월 11일 의결하였음(이른바 ‘엄마 태아산재법’, 2023년 1월 12일 시행).

당시 쟁점 중 하나였던 소급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증상 발현 기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법 시행일 전 3년 이내(2020. 1. 12.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②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6. 1. 11. 이전)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소급효 대상으로 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급효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을 법 시행일인 2023년 전후 시점(“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및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에 <고정>하는 방식의 법률안 부칙이 최종 의결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닌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태아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2021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는데, 이 중 업무관련성이 실제 인정까지 된 6건 가운데 5건은 최초 산재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에 달했음(나머지 1건은 출생 후 1개월 내 신청).

이에 따라 질병 잠복기를 불과 2~3년으로 전제하고 ‘소급효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을 2023년 전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요양급여는 3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공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 부칙 적용례 개정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 부칙 적용례를 개정하여 “이 법 시행일¹⁾ 이후에 출생한 자녀”라는 출생일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최초 요양일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법 제112조에 규정된 시효인 3년 또는 5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 -----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단서 삭제> <삭 제>

1) 법률 제18753호 시행일인 2023. 1. 12.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삭 제>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제112조에 따르도록 하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이 경우 여러 차례의 요양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요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한다.

2. 장해급여: 18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건강손상자녀의 요양이 18세 이후에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3. 간병급여: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 이 경우 여러 차례의 간병을 행한 날에는 각각의 간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한다.

4. 직업재활급여: 다음 각 목의 날가. 제72조제1항제1호의 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직업훈련을 시작

	<u>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의 다음 날</u> <u>나. 제72조제1항제2호의 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장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 내지 제91조의14)²⁾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고,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함)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이 제3장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은 2022. 1. 11.

2)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91조의13(장애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애급여·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애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법률 제18753호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고, 해당 법률의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부 칙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즉 신설된 제91조의12 내지 제91조의14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23. 1. 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거나(부칙 제2조제1호), ②이전에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있어 그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동조 제2호), 또는 ③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동조 제3호)의 세 가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됨.

그런데 이 중 제1호와 제2호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제3호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그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청구의 요건이 되는 부상, 질병 또는 장애 발생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됨.

이에 개정안은 위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라는 출생일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112조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16조제1항), 이에 따라 예컨대 요양급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임.

이에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은 건강손상자녀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법 제112조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예컨대 요양급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급여별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그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청구권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바, 보다 많은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똑같이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질병의 잠복기가 짧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경우와 장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뒤늦게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사이에 보험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의 장기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의 출생일과 관계없이 폭넓게 보험급여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부칙 개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5.9%의 산재보험급여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분담금 증가와 운용수익 및 용자원금회수 등의 영향으로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매년 확대되었음³⁾. 또한 2025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말 기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029년 기준 13.0조원과 12.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음⁴⁾.

둘째, 시간이 많이 도과한 이후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과거의 업무환경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멸실되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보험급여청구인뿐 아니라 사업장 조사, 서류 조사 등을 하여 업무수행 과정의 유해요인 등과 자녀의 부상, 질병,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산재 신청을 유해요인 발생 이후 장기간 가능하도록 한 특례는 사례가 없음.

셋째,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당시 적용례 결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행법 부칙과 같이 결정된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시에 노동계에서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경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3)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6. 7.

4)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5. 10.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 법 시행일 전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당시 3명으로 확인),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사례(당시 4명으로 확인) 및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여 현행과 같이 의결된 것임. 3년이라는 기간은 건강손상 증상이 출생 즉시 발현되거나 일부 질환의 경우에도 발현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음.⁵⁾

고용노동부는 광범위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기금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2022년 법 개정 당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생식독성물질에 따른 자녀 건강손상은 출생 직후 대부분 확인 가능하고 일부 신경계 질환의 경우 2~3년 후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현행 적용례를 마련한 것이며, 법 개정 후 건강손상자녀 산재신청 13건 중 9건이 재해일(진단일)과 출생일이 동일한바 건강손상은 대부분 출생 직후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5)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당시 소급 적용에 관한 부칙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① 산재급여 신청 당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인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 이 법 시행 전 급여 청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허용하였다고 보이고, ② 당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사건(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자녀의 선천적 심장질환 발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관련 소송, 2016두41071)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 바 있는데,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 등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들이 개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③ 공포 후 시행 전 기간 중 증상 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일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보임. 상세한 내용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 6. 29.) 회의록 pp. 26-29.,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 12. 1.) 회의록 pp. 23-27. 참조.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의 업무상 사고 등과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청구일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부족,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역시 건강손상자녀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업주 보험료 부담 증가 등 고용 현장의 부담, 기금의 예측 가능성 저해 등이 우려되고 또한 임신 당시 작업환경과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8